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6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남인순 · 송재봉 · 김 윤
이수진 · 이병진 · 백혜련
김남근 · 김남희 · 전진숙
김현정 · 윤종균 · 손명수
서왕진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톱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그 청구율이 낮고, 법원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톱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 다. 판사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 라.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신설).
- 마.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한다.

제7조제6항제2호가목 중 “제9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의6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9조제1항제2호”를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의6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9조제1항제3호”를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의6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를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를 “청구를 요청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검사”를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으로,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를 각각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와”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로 하며, 같

은 항 제1호 중 “검사”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를 “검사, 사법경찰관”으로,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을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제3호 중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를 “잠정조치의 청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 결정, 집행, 취소, 기간 연장 및 변경에 관한 업무

제2장의2(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스토킹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17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

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지방법원 판사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9(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은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톱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다음 각 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스톱킹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2.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경우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보호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피해자등에 대한 <u>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u> 요청의 절차 등 안내	3. ----- <u>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긴급응급조치(제4항에 따라 그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	2. ----- ----- -----

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
우로 한정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나.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으로 하는 제9조제1항제
2호에 따른 조치의 결정

다. 제4조제1항제2호의 긴급
응급조치에 따른 스톱킹행
위의 상대방등과 같은 사
람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
거인, 가족으로 하는 제9
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
의 결정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가. _____

-----제9

조제1항제2호 또는 제17조

의6제1항제1호-----

4. _____

-----제9조제1항제

2호 또는 제17조의6제1항

제1호-----

다. _____

-----제9

조제1항제3호 또는 제17조

의6제1항제2호-----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② (생략)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

-----.

② -----

-----청구를
요청하거나-----
-----.

<삭 제>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생략)

②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

-----검사, 사법경찰관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으로-----

-----직권으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

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3. (생략)

⑤ 잠정조치 결정(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후단 신설>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2. 3.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고) ① 검사, 사법경찰관-----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신설>

대한 결정(사법경찰관은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으로 한정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잠정조치의 청구-----

3의2.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청구, 결정, 집행, 취소, 기간 연장 및 변경에 관한 업무

4.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장의2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제17조의6에 따른 피
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하 “피해자보호명령사
건”이라 한다)의 관할은 스토킵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
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
와 결정은 지방법원 판사가 한
다.

제17조의6(피해자보호명령) ① 지

방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
으로 스토킵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신 설>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의7(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7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

<신 설>

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17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의8(임시보호명령) ① 지방 법원 판사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전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법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 설>

<신 설>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 명령”으로 본다.

제17조의9(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 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임시 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법원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은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의10(항고와 재항고) ① 다

음 각 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본원

<신 설>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2.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법원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한 경우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11(위임규정)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u>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u>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u><신설></u> ③·④ (생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1. <u>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2. <u>제17조의6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의8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③·④ (현행과 같음)
--	--